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결과를 받고 생각해보는
건축 저작권과 그를 둘러싼 건축산업

Prize Winners has the Copyright of their design

공공건축의 발주와 또 대기업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현상공모 프로젝트에서 그간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다는 약관 및 계약조항이 실행되어 왔다. 물론 발주 시 과거 발주 지침서와 유사 계약서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은연중 발생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는 은연중 발생한 것으로 다루기에는 저작권자인 건축사에게 많은 고통을 주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원칙적으로, 각종 약관 및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 합의의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겠지만 그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즉, 저작권 계약과 설계 계약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설계 계약상 약자인 건축사가 저작권의 발주자 귀속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공정거래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저작자인 설계자(건축사)가 그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금번 공정위 심사의 결론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런 결론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은 건축을 잘 모르는 공공이나, 민간이 발주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소위 건축의 전문가라는 집단에서 발주될 경우와 건축 관련 전담조직이 있는 발주처는 거의 예외 없이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되어 왔다. 실례로 금번, 공정위 심사 대상인 주택공사, 토지공사, 조달청, 안양시, 용인시는 모두 건축의 전문가 집단이거나, 건축과 관련된 전문부서들이 있는 발주처이다. 이런 전문가들이 소속된 각 발주처에서 발주할 경우, 소속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 되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재미있는 현상은 최근에 발주된 국제현상설계에서의 저작권은 일관성 없이 반영된 듯하다. 필자가 확인한 동대문디자인파크와 노들섬오페라하우스의 경우, 저작권이 일방적으로 발주처에 귀속되지 않고, 오히려 설계자인 건축사에게 있었다. 반대로 국내 건축사만을 대상으로 지명하였던, 서울시청 아이디어현상공모의 경우 그 명칭을 아이디어 현상이라고 하고, 저작권을 갑에게 귀속하였다. 이걸 크게 잘못된 상황이다. 결국 발주처가 한국 건축사와 외국 건축사를 차별 대우하고 있으며, 외국 건축사의 경우, 저작권을 갖고 오고 싶으나, 국제적 체면과 문화적, 지적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는 분위기상 그럴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외국건축사와 반대로 국내 건축사는 상대적 무시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금번 공정위의 심의결과에 의거 이제, 저작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약관조항이 무효화 되었고, 또 관련 기관들이 자진시정 한다는 금번 결론에 따라 건축설계의 저작권 문제는 해결된 것인가? 다시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없게 되었는가? 안타깝게도 건축설계 저작권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까지도 몇 건의 저작권 승소 판결이 있었고, 간간히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긴 하였으나, 언제나 해당 건축에 한한 내용이었을 뿐 건축 산업 전반에 저작권이 영향을 전혀 못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금번의 값진 결론도 그냥 둔다면 또한 과거의 여느 판결들 중 하나 정도로 취급되고 말 것이다. 저작권의 문제는 이제 시작이란 생각으로 건축 산업 전반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향후 우리 건축사 뿐 아니라, 건축 산업과 관련된 모든 이들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감시와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설계의 의미가, 시공, 유지관리, 행정업무 등 다양한 업무의 중심에서 움직이는 업무로 각 관련 업역 간의 정합은 설계 업무에 주어진 또 하나의 업무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간략하게 생각해 본 건축 산업내에서 저작권 관련 후속 조치들은, 물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국내의 실정에 부합하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건축설계가 절대로 건축 설계자들만의 업무가 아닌, 관련인들과 지속적으로 연관되는 업무임을 상호 인정하여야만 한다.

돌이켜 보건데, 설계 고유 업무의 중요도만 강조하고, 주변의 상황과 업무를 간과한 것이 오늘의 문제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고, 본 저작권 판결을 계기로 건축 산업내에서 설계의 역할과 의미를 바로 세우고, 이에 따른 실행 대책을 기대해 본다.



박인수 / Park, In-soo, KIRA
(주)아이마크 건축사사무소

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 희망제작소 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